

## 2018년도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고 할인혜택 받으세요.

- 연납 후 이전·말소하는 경우 미사용일수 세액에 대하여 환급 처리
- 연납 후 타지역 진출 시 전입지에서는 해당연도 자동차세 부과 제외
- 연납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으로 6월,12월 부과되며 할인 혜택을 제외한 다른 가산세 등 불이익 없음

목포시가 2018년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1월 31일(수)까지 접수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에 2회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는 경우 최대 연세액의 10%를 할인받는 제도이다. 1월뿐 아니라 3월, 6월, 9월 등 연 4회에 걸쳐 연납신청이 가능하며 연납을 신청할 경우 신청기간에 따라 차등 감면 혜택을 받는다.

신청대상자는 2018년 1월 현재 목포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이며, 신청방법은 목포시청 세정과로 방문 및 전화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http://www.wetax.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ARS(☎ 080-270-8880)를 이용하면 차량번호와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연납신청을 할 수 있다. 연납신청 후 납부방법으로는 금융기관을 통한 직접납부, 신용카드,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등 편리하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목포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작년도 연납 납부 차량과 개별 연납 신청한 17,500여대의 차량 소유자에게 연납 납부서를 12일 일괄 발송하였다.

안정적인 조기 세수확보에 기여하고, 납세자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인만큼 목포시는 많은 주민들이 연납신청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기타 자동차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 270-3448)로 문의하면 된다.